

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‘중간지원조직’을”을 “‘중간지원조직’ 및 ‘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·비영리법인·단체’를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)”을 “(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한다.

제21조 앞의 “제5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22조 앞에 “제5장 보칙”을 삽입한다.

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,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융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·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·양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사회적경제 조직"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면서 재화·서비스를 생산, 교환,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‘협동조합’, ‘사회적기업’, ‘예비사회적기업’, ‘마을기업’, ‘자활기업’, ‘<u>중간지원조직</u>’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‘마을기업’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<u>안전행정부장관</u> 또는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‘중간지원조직’</u> 및 <u>‘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·비영리법인·단체’</u>를 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자치부장관</u> -----</p>

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.

마.·바. (생략)

3. ~ 6. (생략)

제6조(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)

구청장은 위원에 위촉 시 금품·향응수수, 배임·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,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

<신설>

-----.

마.·바. (현행과 같음)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) -----

----- 위촉 해제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위촉 해제를 -----

제19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구청

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대입비,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융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·양여하거나 무상

제19조 · 제20조 (생략)

제5장 보칙

제21조 (생략)

<신설>

제22조 · 제23조 (생략)

으로 임대 · 양여할 수 있다.

제20조 · 제21조 (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)

<삭제>

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

제5장 보칙

제23조 · 제24조 (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)